

사 료 관 리 법 시 행 규 칙
일 부 개 정 령 안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축산환경자원과)

1. 개정이유

사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사료관리법이 일부개정(‘23.12.28. 시행)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, 현장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HACCP 교육훈련이 의무 사항이 됨에 따라 교육의 종류를 신규와 정기로 구분(제16조, 제17조 개정)
- 나. HACCP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(별표 5 개정)
- 다. 표시사항 준수 의무 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(제14조 개정)
- 라. 제조업 재등록 제한 대상자가 제조업 등록 시 등록취소 근거 마련(별표 11 개정)
- 마. 사료성분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추가(제12조, 별지 6, 별지 7 개정)
- 바. 사료검사원 자격 대상 확대(제27조 개정)
- 사. 단미사료 제조업 시설 기준 완화(별표 3 개정)
- 아. 사료 폐기 조치 대상 범위 확대(제34조 개정)
- 자. 명칭 수정(별표 1 개정)
- 차. 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성분등록증 재발급 기간 단축(별지 10 수정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

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원료배합비율표(배합사료, 혼합성 단미사료·혼합성 보조사료 및 각종 합제류 사료에 해당)

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료의 종류·성분 및 성분량 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

제14조 중 “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”를 “제조업자·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제3호 중 “제17조제2항”을 “제17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6조제5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제조업자(종업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규 교육훈련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

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 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.

제2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사료 검사업무 담당 공무원

제34조제2항제1호 중 “성분의 최소량”을 “성분”으로, “부족한”을 “최소량보다 부족하거나 최대량을 초과한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3호 구분란 제3호 중 “반추동물용 섬유질”을 “섬유질”로 한다.

별표 3 비고 1) 중 “유수분리시설·배양시설·알과화시설,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”를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”로 하며, 같은 1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다만, 유수분리시설·배양시설·알과화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.”

별표 3 비고 2) 중 “경우에는”를 “경우와 가금류 부산물만을 원료로 사용하여 사료로 제조하는 경우에는”로 한다.

별표 5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	법 제16조 제7항제3의 2호	시정명령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

별표 11 II.개별기준에 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법 제8조의2 각 호의 제1항제4호의2 조업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법 제25조 제1항제4호의2	등록취소		
--	-----------------	------	--	--

별지 제6호서식 제2호 중 “원료배합비율표(배합사료의 경우에만 해당함

니다)”를 “원료배합비율표(배합사료, 혼합성 단미사료·혼합성 보조사료 및 각종 합제류 사료에 해당)”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료의 종류·성분 및 성분량 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

별지 제7호서식 제2호 중 “원료배합비율표(배합사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”를 “원료배합비율표(배합사료, 혼합성 단미사료·혼합성 보조사료 및 각종 합제류 사료에 해당)”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료의 종류·성분 및 성분량 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

별지 제10호서식 중 “6일”을 “3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
제12조(사료성분의 등록 등)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(생 략) 2. <u>원료배합비율표(배합사료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</u>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② ~ ④ (생 략) 제14조(사료의 표시사항) <u>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</u>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. 제16조(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등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최소한 1개월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신청해	제12조(사료성분의 등록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원료배합비율표(배합사료, 혼합성 단미사료·혼합성 보조사료 및 각종 합제류 사료에 해당)</u>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료의 종류·성분 및 성분량 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</u>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14조(사료의 표시사항) <u>제조업자·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</u>----- ----- ----- 제16조(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

현 행	개정안
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1. · 2. (생 략) 3. <u>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</u> 제17조(교육훈련 등) <신 설> ① <u>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1. ~ 5. (생 략) ② · ③ (생 략) 제27조(사료검사원의 자격 등) 사료검사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·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사료관련 단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. 1.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. 삭제 3. 사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에 2년	----- 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제17조제3항</u>----- 제17조(교육훈련 등) ① <u>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제조업자(종업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규 교육훈련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 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.</u> ② <u>제1항</u>----- ----- -----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③ · 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 제27조(사료검사원의 자격 등) 사료검사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·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사료관련 단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. 1.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. 삭제 3. 사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에 2년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
이상 종사한 사람 <u><신 설></u> 제34조(사료의 폐기 등의 조치) ① (생략) ② 법 제24조제1호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 1. 양축용(養畜用) 배합사료: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된 <u>성분의 최소</u>량이 30퍼센트 이상 <u>부족한</u> 경우 2. (생략) [별표1] 배합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	이상 종사한 사람 4. 사료 검사업무 담당 공무원 제34조(사료의 폐기 등의 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----- ----- <u>성분</u>----- ----- <u>최소량보다 부족하거나</u> <u>최대량을 초과한</u>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[별표1] 배합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d rowspan="6">3. <u>반추 동물 용</u> <u>선유 질</u> 배합 사료</td><td>가. 공장 건물</td><td>내화성 건물로서 제품생산에 적합할 것</td></tr><tr><td>나. 저장 시설</td><td>원료와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춘 것</td></tr><tr><td>다. 혼합 시설</td><td>원료를 적절히 혼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, 그 공정은 동력에 의한 것</td></tr><tr><td>라. 계량 시설</td><td>제품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것</td></tr><tr><td>마. 포장 시설</td><td>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것</td></tr><tr><td>바. 수송 장치</td><td>모든 원료 및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동력운송장치를 갖춘 것</td></tr></table> [별표3]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※ 비고	3. <u>반추 동물 용</u> <u>선유 질</u> 배합 사료	가. 공장 건물	내화성 건물로서 제품생산에 적합할 것	나. 저장 시설	원료와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춘 것	다. 혼합 시설	원료를 적절히 혼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, 그 공정은 동력에 의한 것	라. 계량 시설	제품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것	마. 포장 시설	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것	바. 수송 장치	모든 원료 및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동력운송장치를 갖춘 것	<table><tr><td rowspan="6">3. <u>선유 질</u> 배합 사료</td><td>가. 공장 건물</td><td>내화성 건물로서 제품생산에 적합할 것</td></tr><tr><td>나. 저장 시설</td><td>원료와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춘 것</td></tr><tr><td>다. 혼합 시설</td><td>원료를 적절히 혼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, 그 공정은 동력에 의한 것</td></tr><tr><td>라. 계량 시설</td><td>제품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것</td></tr><tr><td>마. 포장 시설</td><td>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것</td></tr><tr><td>바. 수송 장치</td><td>모든 원료 및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동력운송장치를 갖춘 것</td></tr></table> [별표3]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※ 비고	3. <u>선유 질</u> 배합 사료	가. 공장 건물	내화성 건물로서 제품생산에 적합할 것	나. 저장 시설	원료와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춘 것	다. 혼합 시설	원료를 적절히 혼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, 그 공정은 동력에 의한 것	라. 계량 시설	제품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것	마. 포장 시설	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것	바. 수송 장치	모든 원료 및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동력운송장치를 갖춘 것
3. <u>반추 동물 용</u> <u>선유 질</u> 배합 사료		가. 공장 건물	내화성 건물로서 제품생산에 적합할 것																								
		나. 저장 시설	원료와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춘 것																								
		다. 혼합 시설	원료를 적절히 혼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, 그 공정은 동력에 의한 것																								
		라. 계량 시설	제품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것																								
		마. 포장 시설	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것																								
	바. 수송 장치	모든 원료 및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동력운송장치를 갖춘 것																									
3. <u>선유 질</u> 배합 사료	가. 공장 건물	내화성 건물로서 제품생산에 적합할 것																									
	나. 저장 시설	원료와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춘 것																									
	다. 혼합 시설	원료를 적절히 혼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, 그 공정은 동력에 의한 것																									
	라. 계량 시설	제품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것																									
	마. 포장 시설	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것																									
	바. 수송 장치	모든 원료 및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동력운송장치를 갖춘 것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
1) 같은 공장에서 2 이상의 단미사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단미사료별로 <u>유수 분리시설·배양시설·알파화시설,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각각 따로 갖추어야 하며, 그 밖의 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시설로 갖춘 수 있다.</u> 2) 1)에도 불구하고 제18호, 제20호, 제21호 및 제23호 사료의 경우에는 같은 공장에서 2 이상의 단미사료를 생산할 수 없다. 다만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u>에는</u> 그러하지 아니하다. 3) (생략)	1) 같은 공장에서 2 이상의 단미사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단미사료별로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각각 따로 갖추어야 하며, 그 밖의 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시설로 갖춘 수 있다. 다만, 유수분리시설·배양시설·알파화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.</u> 2) 1)에도 불구하고 제18호, 제20호, 제21호 및 제23호 사료의 경우에는 같은 공장에서 2 이상의 단미사료를 생산할 수 없다. 다만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u>와</u> 가금류 부산물만을 원료로 <u>사</u>용하여 사료로 제조하는 경우<u>에는</u> 그러하지 아니하다. 3) 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5]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	[별표5]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h>위 반 내 용</th><th>근거 법령</th><th>처분 기준</th></tr><tr><td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</td><td>법 제16조 제7항제1호</td><td>지정 취소</td></tr><tr><td>2.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</td><td>법 제16조 제7항제2호</td><td>지정 취소</td></tr><tr><td>3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</td><td>법 제16조 제7항제</td><td>시정 명령</td></tr></table>	위 반 내 용	근거 법령	처분 기준	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6조 제7항제1호	지정 취소	2.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	법 제16조 제7항제2호	지정 취소	3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6조 제7항제	시정 명령	<table><tr><th>위 반 내 용</th><th>근거 법령</th><th>처분 기준</th></tr><tr><td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</td><td>법 제16조 제7항제1호</td><td>지정 취소</td></tr><tr><td>2.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</td><td>법 제16조 제7항제2호</td><td>지정 취소</td></tr><tr><td>3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</td><td>법 제16조 제7항제</td><td>시정 명령</td></tr></table>	위 반 내 용	근거 법령	처분 기준	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6조 제7항제1호	지정 취소	2.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	법 제16조 제7항제2호	지정 취소	3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6조 제7항제	시정 명령
위 반 내 용	근거 법령	처분 기준																							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6조 제7항제1호	지정 취소																							
2.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	법 제16조 제7항제2호	지정 취소																							
3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6조 제7항제	시정 명령																							
위 반 내 용	근거 법령	처분 기준																							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6조 제7항제1호	지정 취소																							
2.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	법 제16조 제7항제2호	지정 취소																							
3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6조 제7항제	시정 명령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		개정안		
<신 설> 4. 법 제25조제1항제8호·제9호·제12호부터 제14호까지·제16호·제18호 및 제19호에 해당하여 2개월 이상의 영업의 전부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.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6.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.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표시를 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표시한 경우 8. 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9.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	3호		4.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5. 법 제25조제1항제8호·제9호·제12호부터 제14호까지·제16호·제18호 및 제19호에 해당하여 2개월 이상의 영업의 전부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6.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7.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.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표시를 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표시한 경우 9. 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0.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	3호 법 제16조 제7항제3의2호 법 제16조 제7항제4호 법 제16조 제7항제5호 법 제16조 제7항제6호 법 제16조 제7항제7호 법 제16조 제7항제8호 법 제16조 제7항제9호 법 제16조 제7항제10호 법 제16조 제7항제11호 법 제16조 제7항제12호	지정취소 지정취소 지정명령 지정명령 지정명령 지정명령 지정취소
[별표 11] 행정처분기준			[별표 11] 행정처분기준		
I. 일반 기준 (생 략)			I. 일반 기준 (생 략)		
II. 개별 기준			II. 개별 기준		

현행

위 반 사 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1. ~ 4. (현행과 같음)				
<신 설>				
5. ~ 14. (현행과 같음)				

[별지6~7] 사료성분등록신청서

첨 부 서 류	1.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	수수료
	2. 원료배합비율표(배합사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품목당 5,000원
	3.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<신 설>	

[별지10] 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6일

개정안

위 반 사 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1. ~ 4. (현행과 같음)				
4의2. 법 제8조의2 각 호의 제조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법 제25조제1항제4호의2	등록취소		
5. ~ 14. (현행과 같음)				

[별지6~7] 사료성분등록신청서

첨 부 서 류	1.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	수수료 품목당 5,000원
	2. 원료배합비율표(배합사료, 혼합성 단미사료·혼합성 보조사료 및 각종 합제류 사료에 해당)	
	3.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	
	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료의 종류·성분 및 성분량 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	

[별지10] 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3일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	
연 락 처	(044) 201 - 2359, 2360